##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9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이용호・민병덕・태영호

신정훈 • 안호영 • 양정숙

박상혁 • 박영순 • 한병도

신영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 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이와 관련,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지도자는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빌미로 운동선수와 상하관계라는 위력을 악용,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 선수가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임. 심지어 폭력 사실이 발각되어도 선수가 당한 피해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 현실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계 폭력 행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이에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당연 취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

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일상에 만연해 있는 각종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제12조, 제18조의4및 제45조).

#### 법률 제 호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제5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에 그 밖에 직무수행 중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제3항 중 "제 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3제1항 중 "제 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del>ரி</del> )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5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 <u>제12</u>	<u>제12조</u>
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	제1항 및 제2항
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	
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 ①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

 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생 략)

<신 설>

-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 육관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 여야 한다.
- ⑤ <u>제1항</u>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 ~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 각 호 외에 그 밖에 직무수 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u>제1항 및 제2항</u>-----
- ⑤ <u>제1항 및 제2항</u>-----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 (3) -----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제12조제1항 및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제2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청문)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 여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 우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 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지 및 제18조의7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ㆍ지급중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